의안번호	제2753호			
의 결	2024			
연 월 일	(제 회)			

의	
결 사 항	
사	
항	

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

발	의	자	김석한	0	기원	片	7인
발의연월일			2024	1.	3.	6.	

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(김석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3

발의연월일: 2024. 3. 6.

발 의 자: 김석한, 김향숙, 우정욱,

김원순, 최두임, 허옥희, 이정숙 의원(7인)

1. 제정이유

고성군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군수의 책무,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보조금 신청, 보조금 지급,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13호

- 예고기간: 2024. 3. 6.(수) ~ 3. 11.(월)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음식물류 폐기물"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·유통·가공
 ·조리·보관·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
 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.
 - 2. "감량화"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,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·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감량기기"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, 환경분야 검증, 품질검사,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(이하 "군" 이라 한다)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. 다만,

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.

- 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일반·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보조금의 지원)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·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.
 - 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 0분의 50범위(최대 50만원)에서 지원한다.
- 제6조(지원신청 및 교부 등)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자"라 한다)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사후관리 등) 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·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,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 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

<앞면>

									131 C
신	청		성 명			선 월 일 자등록번호)		성별	(남, 여)
		인	주 소 (연 락 처)			[H.P :]
세 (사	대 업	주 주)	성 명			세대주와의 관계 (사업주)			
음식물류폐 감량기기 - 및 설치니	키기물	제 조 사			구 입 금 액		<u> (</u>	원	
	7]7]	구입	판 매 처			감 량 방 식	건조, 발	효, 기티	+
	설치나		설치장소						
보 조 금 신청내 ⁹	ュ	신 청 금 액		급		원			
			은 행	명	※ 신청인	! 계좌 ()
			입금 계조	l 번호					

「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른 보 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조례 제7조 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: 서명 또는 인

고성군수 귀하

첨부서류 : 1. 구입 영수증(상품명, 판매점명, 연락처, 구입 연월일 등 명시) 1부.

- 2. 품질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(감량방식 포함) 1부.
- 3. 감량기기 설치 사진(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) 1부.
- 4.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.
- ※ 뒷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

신청자 확인(주민등록등재여부): 직 성명 (확인)

1.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,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,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(거주여부 등) 확인
- ②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(세대주) - 성명, 연락처, 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 등
-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(재신청 금지기간 5년)
-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,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

및 행정정보 2.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

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

- ※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▶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(□예, □아니오)

신청인 성 명: 서명 또는 인

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폐기물관리법

- 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저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생활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· 군 ·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>
 -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、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、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、군、구에서는 분리、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3. 7. 16., 2019. 11. 26.>
 - ⑤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,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, 11, 28., 2019, 11, 26.>